

평창군읍·면자치위원회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9월 15일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경식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개발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·면 행정예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“평창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”를 폐지하고 “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”를 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1964.8.7 조례 제71호로 제정된 “평창군읍·면개발위원회 조례폐지”
- 심의사항(안제2조) ⇒ 주민자치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
- 기타안은 대부분 기존 평창군읍면개발위원회 조례와 유사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먼저 폐지조례인 평창군읍·면개발위원회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

- 제1조(목적)와 제2조(심의사항)중 “향토개발”을 “지역사회발전”으로 조정하였고 “자주사업”을 “주민자치사업”으로 조정하였으며,
- 제3조(구성)에있어 기존에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읍의경우 30인, 면의경우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~30명이내로 구성토록 읍·면장에게 자율권을 확대한 것을 볼 수 있음.
- 위원의 선임(안제4조), 위원의 임기(안제5조)등은 폐지조례안인 평창군읍·면개발위원회조례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음.

■ 종합 검토결과

-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30년이상된 조례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은 비취지며,
- 제정목적과 주기능에 있어서는“평창군읍·면개발위원회조례”와 유사함을 볼 수 있음.
- 현재 평창군읍·면개발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읍·면개발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, 심지어는 구성조차 안되어 있는 면도 있음을 볼 수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 설치후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전면 재정비를 통한 추진시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 과연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시되고 특히 읍·면민영회등

과 그 기능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확실한 추진의지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1. 읍면 번영회 활동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지?	○ 읍면 번영회는 근거가 없는 단체이며, 본 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다소 구분이 있음
2. 현행 읍면개발위원회가 활성화 안된 이유는?	○ 70년도 이전만해도 토론문화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았음.

5. 토 론 요 지

가 현행 평창군 읍·면개발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함에도 명칭만 개정한다고 해서 활성화 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.

나. 현행 읍면 민간단체로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읍면 번영회가 있음에도 관이 주도하는 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추진과정에서 운영의 미비점이 나타날 경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임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읍·면자치위원회조례안 1부 . 끝 .